

2025
01

VOL. 2



[발행인] 김태형
[발행일] 2025.01

SC행복한실버요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
로81번길 74, 5,6층

☎ 042-634-0124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며



행복한실버요양원

HAPPY SILVER SENIOR CARE

행복한소식 톡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보호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복한실버요양원을 믿고 함께 해 주신
보호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어르신들께 더욱 따뜻하고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원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인권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돌봄, 어르신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두루두루 도모하는 전문적
인 요양서비스를 실천하여 어르신들께서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보호자님들과 더 소통하고, 어르신들께서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보호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1월 1일

행복한실버요양원 임직원 일동 올림





1

24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개최

24년 12월 17일 보호자님 8명을 모시고
24년 하반기 주요사업과 25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과 기관의 비급여 인상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2

가족 참여 프로그램 "트리 만들기"

간담회 후 진행된 가족과 함께 트리만들기를 진행하
였습니다. 보호자분들과 함께 트리를 꾸며보고 준비
된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도 진행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어르신들께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Galaxy Buddy3



Galaxy Buddy3



3

24년 하반기 화재대피훈련 실시

24년 12월 10일 전체 수급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시 대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계단과 완강기를 이용한 대피를 연습하였으며 모의훈련이지만 실제처럼 대피함으로써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4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4년 12월 10일 14:00 4분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4년도 추경, 25년도 예산(안), 사업계획(안)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수급자 대표 전군자 어르신이 참여하셔서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표를 해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양한 신체 기능 프로그램 제공



2025년 1월부터 수급자 신체기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거동능력, 관절구축도, 일상생활능력 등 반영하여 총 3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룹별로 대근육, 소근육을 활용한 신체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A그룹

- 교구를 이용한 손의 구축 완화 및 팔, 다리 관절 가동범위 확장
- 세라밴드를 이용한 유연성과 상하지 근력 증가

B그룹

-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지구력, 근력, 평형성, 유연성, 기동성 증가

C그룹

- 신체발달을 포함하여 협응력 증가와 집중력 증가

매일 외부활동 진행

24년 하반기동안 진행한 산책 프로그램에서 수급자 및 보호자님들이 호전적인 반응을 보여주심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매일 2~3명 수급자 어르신들과 함께 카페, 은행, 마트, 쇼핑몰 등을 방문하여 사회일원으로써의 소속감 증가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 교육대상 |

종사자 전체

| 일정안내 |

1	1월	운영규정
2	2월	급여제공지침
3	3월	CCTV 내부관리
4	3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 교육대상 |

수급자, 보호자 전체

| 일정안내 |

1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2	1월	폭언·폭행·성희롱 예 방 및 상호존중
3	3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 담당자 |

사회복지사 장은임

※ 2025년 노인요양시설급여 [평가지표 20 생애말기돌봄]에 따라 보호자(수급자)에게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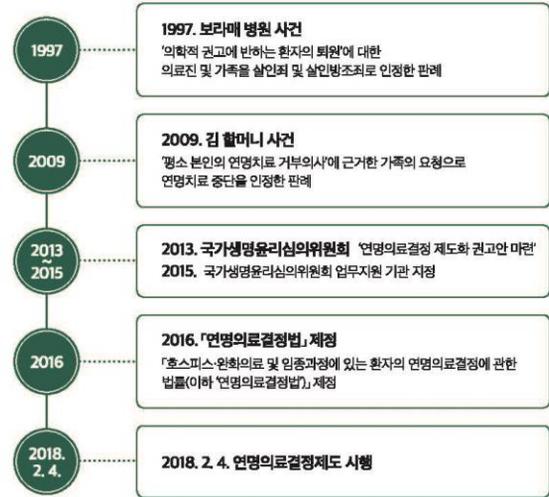
또 다른 삶의 준비,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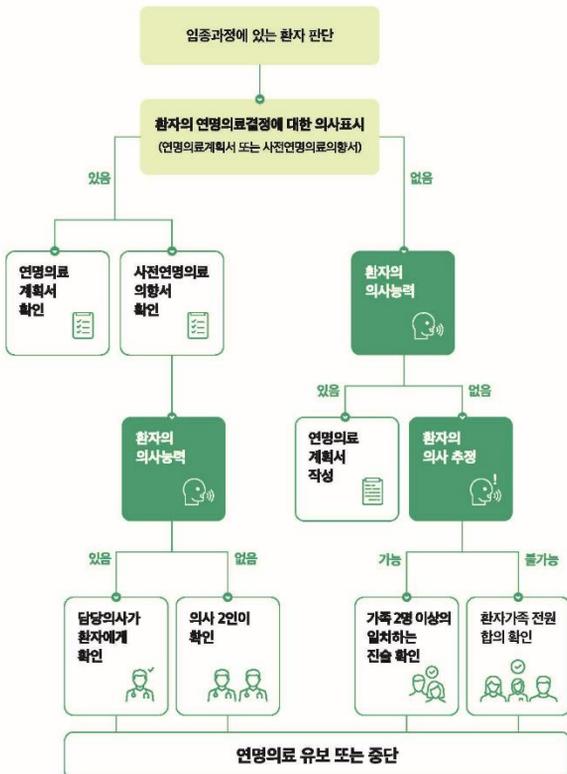
-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할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 2**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가 환자나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쉽게 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



Q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1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 2 어디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 3 무엇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Q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담당의사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 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부작용 흉부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

혈액 투석

신장 기능이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뢰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설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부작용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손상, 출혈, 감염 등 발생
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가능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부작용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 탈모 등 발생 가능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부작용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종 및 출혈 등 발생 가능



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로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부작용 출혈, 응고 장애,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 발생 가능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요구될 수 있는 치료 방법

부작용 미열이나 피로감 또는 체액 과부하 등 발생
그 외 부지할 혈액 수혈, 알레르기, 급성 폐 손상,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



혈암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부작용 지속적인 혈암상승제 투여 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

기타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소중한 나, 아름다운 마무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주요 업무



관리 체계



자주 묻는 질문

- Q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이 가능합니다(동법 제43조). 다만,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설치·등록이 어렵다면 윤리위원회 임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동윤리위원회의 임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등록하면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Q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A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따릅니다.
- Q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암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입니다. 호스피스란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가 그 가족에게 통증·중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 Q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했다면,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환자가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 Q 가족이 없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우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직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의식도 없는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등록기관 방문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본인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상담 및 작성
1:1 상담을 통해 67지 관인 사정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등록 및 효력 발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은?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어디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계속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검색 QR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 사항은?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환원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에 대하여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란? 호스피스 대상 환자여 7가주에 이를 경우 종말의 고통을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양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로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면 그 취지에 따라 위임의료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적인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홍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통보되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등록기관 지정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철회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폐업/휴업	등록기관이 폐업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모든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관됩니다. (다만 휴업의 경우, 등록기관의 의사에 따라, 관련 기록을 등록기관에서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열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 환자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성명 김건강 (1959.11.29)

등록번호 R23-56789

등록일 2023.10.05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등록되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임시 의료기관 관계 QR코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전화 1855-0075
수신국번부 1422-2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준비하는

연명의료계획서

1.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2.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변경 및 철회는 언제든지 담당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란?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서식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역할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 불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종교·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디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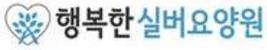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계속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검색 QR

※ 2025년 노인요양시설급여 [평가지표 7 직원인권보호]에 따라 보호자(수급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상호존중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I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수칙

1.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존중하기
2.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금지
4. 성적 성질을 가진 언급, 외설적 출판물을 보여주는 행위,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적 요구 하지 않기
5. 성희롱 고충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안내하기

IV 상호존중 수칙

1. 상호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2. 상대방의 말 경청하기
 - 나만 옳다는 생각은 No!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기
3.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4. 칭찬의 말 주고받기
 -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5. 적절한 호칭 사용하기
 -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낮아도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6. 모욕적, 성차별적 언행하지 않기
 - 외모 지적, 성적 농담 등 하지 않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안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란?

- ✓ 흔히 **독감**으로 불림
- **감염경로** : 주로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
- **잠복기** : 1일~4일 (평균 2일)
- **주요증상** : 갑작스러운 고열(38°C 이상) 호흡기 질환(기침, 인후통 등),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

유행주의보란?

- ✓ 지역사회 유행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유행판단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의보 발령'**



달라지는 점

- ✓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의심증상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급여 적용
- <고위험군>**
만 2주 이상 신생아~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등 기저질환자

4대 예방수칙

- ✓ 올바른 손씻기
 - ✓ 기침 예절 지키기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 접종시기 등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학대노인

우리는 지킴이!

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방임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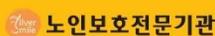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기관 연락처 안내

SC행복한실버요양원

기관 전화번호

042-634-0124

기관 팩스번호

042-367-7771

기관 휴대전화

010-3932-1240



긴급 연락망

010-2831-6425

010-4179-5967